

[별지 제31호서식] <개정 2023. 5. 3.>

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기성실적 증명(신청서)										처리기간 즉시						
신청인	①상호										②대표자					
	③영업소소재지										④업종 및 등록번호					
공사내역																
⑤종합공사명																
⑥현장소재지(번지까지 기재)										⑦공사지역						
⑧원도급공종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제25조에 따른 공종을 말합니다)																
⑨연도	⑩계약 연월일	⑪착공 연월일	⑫준공 연월일	⑬종합공사 기성액							업종별 기성액(기 증명사항)					
											⑭세부공종 (전문공사 업종)			⑮기성액		
				조	천	백	십	천	백	십	천	백	십	천		
⑯기타(공사의 규모·공법·공동 도급내역 등)																
년도중 위와 같이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하도급 종합공사 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귀하										수수료						
										없음						
위 사실을 증명합니다.																
										년 월 일						
수급인																
·상호																
·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														
·대표자 성명										[인]						
·영업장 소재지																
·전화번호																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m²(재활용품))